

제391회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1년11월16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가. 교육부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가. 교육부 소관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가. 교육부 소관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25)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39)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42)
7.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508)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14)
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97)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39)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03)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18)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3)
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7)
1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66)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9)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37)
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6)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14)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15)
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22)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0)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2)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4)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5)
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63)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67)
2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19)
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0)
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1)

3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3)
3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26)
3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10)
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33)
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54)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86)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87)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89)
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14)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46)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68)
4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71)
43.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300)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9)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25)
46.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386)
47.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387)
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0)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46)
50.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47)
5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90)
5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1)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48)
5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99)
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11)
56.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2112734)
5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96)
5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97)
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99)
6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1)
6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3)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4)
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7)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8)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4)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16)
6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33)
6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50)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51)
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52)
7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53)
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54)
7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57)
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72)

7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88)
 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3)
 7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6)
 7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7)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5
가. 교육부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5
가. 교육부 소관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5
가. 교육부 소관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5) 9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 9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42) ...10
7.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8) 10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4) 10
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7) 10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9) 10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3) 10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8) 10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 ...10
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7) 10
1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6) ...10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9) 10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7) ...10
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6) 10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4) 10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5) 10
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2) 10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0) 10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2) 10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4) 10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5) 10
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3) 10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7) 10
2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9) 10
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0) 10
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1) 10
3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3) 10
3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6) 10
3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0) 10

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3)	10
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4)	10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6)	10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7)	10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9)	10
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14)	10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6)	10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8)	10
4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1)	10
43.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0) ..	10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9) ..	10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5)	10
46.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6) ..	10
47.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7) ..	10
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0)	10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6)	10
50.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7)	11
5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0)	11
5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1)	11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8)	11
5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9)	11
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11
56.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4)	11
5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6)	11
5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7) ..	11
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9)	11
6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1)	11
6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3)	11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4)	11
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7)	11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8)	11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4)	11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11
6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3)	11
6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0)	11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1)	11
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2)	11
7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3)	11
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4)	11
7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7) ..	11
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2) ..	11

7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8)	11
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3)	11
7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6)	11
7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7)	11

(15시50분 개의)

○위원장 조해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가. 교육부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가. 교육부 소관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가. 교육부 소관

○위원장 조해진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까지 이상 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조정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조정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0일·12일·15일 각각 교육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 6988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1269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안에서 1133억 원을 증액하고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안에서 2393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사학진흥기금 지출에서 30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은 60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육부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은 사업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내년에는 사업 수요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의 경우 고등교육 전반의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학당 지원액 조정을 통해 지원 대상 대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미선정 대학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13개, 전문대학 14개를 추가 지원하고 대학당 평균 지원금을 조정함에 따른 잔여액이 발생하여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1억 2000만 원 감액 조정,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55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2021년도 계속사업 단가 인상분과 2022년도 신규 사업분으로 87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시대 극복 지원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예산 254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 원 인상하기 위해 2393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지역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안에서 플랫폼을 1개 추가로 증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 4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8월 시행된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이 2022년 8월에 종료됨에 따른 강사 대량 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유지에 필요한 예산 38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립대학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며 학습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38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립대병원 간호사들의 높은 퇴사율과 그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 6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해소 등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거점지원센터가 필요한바 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3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인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바우처 지급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및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비를 122억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대상자 확대 및 해외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신설을 위해 19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와 생활 SOC 시설을 복합화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컨설팅 지원 경비 2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해진 조경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조경태 소위원장님이 보고드린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께서 예산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의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당 위원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냈고요 그다음에 여야 간사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는데요.

예산소위원장님이 제시했던 대학혁신지원 사업

은 13개의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되 단가를 조정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의사 결의를 했었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14개의 전문대학을 추가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5500만 원의 감액을 의결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3개 대학과 14개 대학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안으로 협의를 보았고요, 존경하는 정경희 야당 간사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안하고 있는 대안은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 수정안은 160개 대학에 50억씩을 지원해서 8000억 원, 그래서 650억 원을 증액하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개 대학에 대해서 40억씩 지원을 해서 4440억을 증액하고 총 1210억 원의 증액을 서로 합의해서 증액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제 의결한 내용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해진 다른 의견……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인숙 위원 예산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지난 며칠간 예산안 검토와 조정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원양성대학 양성평등교육역량 강화 사업과 대학인권센터 확산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주 증액 요청을 드렸는데 소위에서 오히려 정부안보다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부모교육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생각하면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2018년에 이루어진 실태조사를 보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입니다. 게다가 한부모·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자녀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에 대한 현장의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상당합니다.

이번에 제가 요청했던 예산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부모지원기관을 연계하는 부모전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등 부처 간 연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수준으로서는 어렵도 없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위해 기관 간의 허브 역할을 할 중앙기관이 필요합니다. 부모교육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가 발의한 교육기본법과 평생기본법도 올라와 있는데요. 법 통과를 비롯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장관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해진 다음,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탄희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결소위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급여 예산 100억 정도 저희가 증액 요구를 했는데 예산소위 심사 끝에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쉬운 게 제가 국감 과정에서 이게 불용액이 수백억씩 발생을 해서 결국 기재부에서 올해 예산에서 불용액만큼 감액해서 편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찾아보니 교육부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더라. 중생보위에서 관련된 기준을 정하는데 교육부차관께서 지난 5년간 직접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적을 했고 장관께서도 ‘교육급여대상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구체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제외되는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서 의원실과 협의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위원님 취지대로 그렇게 확대하는 것에 동의해서 그런 방안들을 제가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요. 아직 보고를 못 드렸다면 빨리 저희가 그 부분은 해결방안들을 갖고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속도를 좀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관님께서 이미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언급도 하신 게 있어요,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

면 개선안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개선안이 빨리 나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좀, 그러니까 중생보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든지 개최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비상적으로 개최를 해서라도 제도를 빨리 바꾸고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당장 내년 2022년부터 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증액 요청을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 구체적인 개선안도 아직 저희 의원실로 보고가 안 됐고 그래서 중생보위 개최 등과 같은 비상적인 수단을 밟기도 좀 어려워졌고 또 결과적으로 이번에 증액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교육부에서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특별히 다시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 말고 제가 현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서울대 종합감사가 끝났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제 끝났습니다.

○이탄희 위원 종합감사 사안, 주요 감사 내용에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가 들어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종합감사니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런데 잘 알려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해서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을 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갑질 판정을 받았던 그 해당 서울대 당국자가 보니까 최근에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장관님, 혹시 해당 내용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탄희 위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갑질이라고 판정을 받은, 시험 강요라든가 드레스코드 강요 행위를 한 실무자가 있어요, 담당자, 서울대 당국자. 그런데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라고 나왔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확인을 했지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마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재 관련한 징계 사유 등에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감사 결과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저희

가 징계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 나갔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징계가 결정이 났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분을 할 때는 그 의견까지를 감안하고 확인한 내용을 판단해서 처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탄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76조의3을 보면 갑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듣기로는 서울대 쪽에서는 ‘선의로 했다. 그리고 해당 행위자가 평소에 직원들한테 평판이 좋았다’ 이런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가장 가벼운 경고조치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구두로 들려 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일단 징계 사유는 그 행위에 대한 것이지 그 사람이 평소에 평판이 좋았다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의였다, 이것도 이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안의 정말 끔찍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 행위자가 자기가 어떤 의도로 행위를 했든 간에 상대방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 했고 지금도 인식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지만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징계 수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을 종합감사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나중에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가 나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도 감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충분히 확인하고 미진하다면 저희가 다시 또 처분과 관련해서는 조치를 원칙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지난번에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시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8일, 거의 일주일이 된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정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강민정 위원 언제쯤 완료 예정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일주일 잡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어서 약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 결과를 나오는 대로 좀 우리 교육위에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역사수업 시수 감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고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지금 교육과정 구성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내에서 어떤 협의 결과들이 있었는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저희가 11월—다음 주지요—23·24일경에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들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셨던 한국사 시수의 문제는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다르지 않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지금 최종 정리 중이어서요 발표 내용이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역사교육을 강화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역사교육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고교학점제로 전환되는 이 전환기에 시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정한 교과 수업 시수를 침해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교육과정 안에 좀 잘 견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시고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예산 관련 질의신지 아니면 현안이나 정책 관련 질의신지요?

○**윤영덕 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건 처리를 먼저 하고 현안 발언은 안건 처리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예, 현안이나 정책 관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법안 상정하고 대체토론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학혁신지원 사업 및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찬대 간사님 말씀하신 증액안은 오늘 의결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언급해 주신 학부모지원센터 관련 예산 의견이나 또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하신 교육급여 예산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업무나 또 부처의 정책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 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해진** 교육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절차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자구 정리 등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유은혜 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경태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유은혜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에 숙려 기간을 경과한 법률안을 모두 상정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협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5)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42)
7.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8)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4)
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7)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9)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3)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8)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3)
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7)
1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6)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9)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7)
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6)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4)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5)
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2)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0)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2)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4)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5)
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3)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7)
2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9)
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0)
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1)
3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3)
3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6)
3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0)
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3)
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4)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6)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7)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9)
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14)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6)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8)
4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1)
43.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0)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9)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5)
46.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6)
47.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7)
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0)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6)

50.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7)
5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0)
5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1)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
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8)
5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9)
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112711)
56.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734)
5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796)
5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2797)
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9)
6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2851)
6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3)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2854)
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2857)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
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8)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4)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6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2933)
6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0)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2951)
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2952)

7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3)
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4)
7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7)
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2972)
7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
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8)
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3)
7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6)
7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3037)

(16시16분)

○위원장 조해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8항까
지 이상 7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고 다만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향 의원 존경하는 조해진 교육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비례대표 윤미향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
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산업체 현장실습이나 파트타임형 노
동현장에서 청소년의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
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반하여 청소
년들의 노동, 노동권 및 노사관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미

국, 일본 등에서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 중요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처한 노동문제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중 61.1%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조차 몰랐던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임금 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일하는 여성 청소년의 5.4%는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70%는 참고 일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본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법률안은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한 노동환경으로 조성하고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동인권교육에는 인간과 노동,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노사관계 이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교육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노동인권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시도의 학교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의 통과로 모든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국가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해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미향 의원님께서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직접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참고로 유은혜 장관께서는 총리 주재의 방역대

책회의 참석 관계로 16시 40분경에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도 양해를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서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5분씩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해진 대체토론이시지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대체토론은 아닌데요, 일단 먼저 예산심의를 위해 가지고 수고하신 우리 조경태 소위 위원장님, 안 계신데요, 그리고 소위 여야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교육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모레가 수능시험일입니다. 이번에 시험 보는 고3 수험생들은 지난 2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고2, 고3을 보냈고요. 또 우리 장관님께서도 코로나 교육환경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교육부를 대표해서 내일 시험 보는 학생,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육부장관께서 노고의 말씀과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들에게 시험장 관리가 안전하게 잘 되고 있다는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먼저 장관님께서 해주시면 수험생들이나 교사, 학부모들이 좀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도 내일모레 자녀 두 사람이 동시에 수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의 수장이신 교육부총리님께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격려말씀한 말씀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맙습니다.

내일모레 50만여 명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험생이나 또 가족분들, 학부모님들 모두 위원장님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고 최근 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여름부터 수험생들은 백신접종을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험장에서는 일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확진이 된 수험생들은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배치해서 안전하게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장을, 고사장을 마련해서 각각 수험생의 유형별로 시험장, 고사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매일매일 수험생 중 확진자나 격리자 정보를 질병청이랑 공유하면서 병상 배치나 시험장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이미 지난 11일부터 고등학교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서 수험생들이나 감독관, 교사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당일 날에는 저희가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능시험 중의 소음이라든가, 특히 영어 듣기 시험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기관들의 협조 속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점점되고 어제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수능 문제지도 다 배부가 되고 그렇게 계획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번 수험생들은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정말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2년여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수험생들 모두에게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해 온 과정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끝까지 함께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부는 교육청, 질병청, 지자체 또 관계 여러 기관과 함께 수능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평소에 늘 따뜻하다가 수능날만 되면 날씨가 왜 그렇게 추운지, 또 마음도 춥고.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또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총리님 말씀처럼 올해 수험생들은 특별히 더 2년간의 공백 때문에 수험생과 부모님들 마음

이 더 노심초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민석 위원님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님의 메시지가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큰 힘이 되실 걸로 믿고 여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제출된 서면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여러분, 국회 관계자,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윤영덕
이탄희	정경희	조경태	조해진

○청가 위원(2인)

金炳旭 도종환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윤미향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전문위원	박재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 장관	유은혜
차관	정종철
차관보	이상원
기획조정실장	김문희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은옥

학교혁신지원실장	이	상	수
정 책 기 획 관	황	성	환
교육복지정책국장	오	석	환
학 생 지 원 국 장	류	혜	숙
교육안전정보국장	김	병	규